

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농·축협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농어가 목돈마련저축」특약, 적립식예탁금약관 및 예탁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농어가목돈마련저축
- 상품특징 :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 이자 외 저축장려금 추가 지급

2 거래 조건

○ 적용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 (작성기준일 : 20 . . .)

구분	내용														
가입대상	농업인, 어업인, 양축인 및 임업인														
가입한도	월 200천원(연간 240만원)														
계약기간 및 납입방법	3년, 5년(월납, 분기납, 반기납 중 1선택)														
가입요건	<p>○ 일반 저축가입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헥타르 초과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-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자 - 5톤 초과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- 양식어업인 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」제2조제1항제2호의 어선원 -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(합산분)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- <별표1>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별 표 1 >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◁ 저축가입대상 양축가의 소유가축 기준 ▷ 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0 auto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style="width: 50%;">가축종류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규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젖소, 사슴</td> <td>20마리 이하</td> </tr> <tr> <td>소, 말</td> <td>30마리 이하</td> </tr> <tr> <td>돼지, 산양, 면양, 개</td> <td>150마리 이하</td> </tr> <tr> <td>토끼, 친칠라, 밍크</td> <td>5,000마리 이하</td> </tr> <tr> <td>가금(家禽 : 닭, 오리 등)</td> <td>10,000마리 이하</td> </tr> <tr> <td>벌꿀</td> <td>150군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주 1. 어미가축을 기준으로 하며, 새끼가축(분만 또는 산란경력이 없는 가축을 말한다)은 2마리를 1마리로 본다. 주 2. 위 표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가축은 유사한 종류의 가축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.</p>	가축종류	규모	젖소, 사슴	20마리 이하	소, 말	30마리 이하	돼지, 산양, 면양, 개	150마리 이하	토끼, 친칠라, 밍크	5,000마리 이하	가금(家禽 : 닭, 오리 등)	10,000마리 이하	벌꿀	150군 이하
가축종류	규모														
젖소, 사슴	20마리 이하														
소, 말	30마리 이하														
돼지, 산양, 면양, 개	150마리 이하														
토끼, 친칠라, 밍크	5,000마리 이하														
가금(家禽 : 닭, 오리 등)	10,000마리 이하														
벌꿀	150군 이하	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	
가 입 요 건	<p>○ 저소득 저축가입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농업인(단, 1,000㎡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는 제외함) -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어업인 - 상기 <별표1>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 이하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농업인 - 5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(합산분)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<p>○ 저축가입 제한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자 -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의 중위소득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)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(가입자 외 세대원 소득 불포함) 	
약정이율 및 장려금지급률	<p>○ 약정 이율 : 연 2.45%(2018. 1. 1. 가입 기준, 매년 변경이율 적용)</p> <p>○ 장려금 지급률 : 연 0.9 ~ 4.8%</p>	
제 출 서 류	<p>○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농지원부, 어업 면허(허가)증, 임야대장 등 (단, 가입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람)</p>	
특별중도해지	<p>○ 가입자의 사망,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상해/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계속하여 납입하지 못한 때</p> <p>○ 특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만기 해지 지급장려금 지급률과 동일하게 지급</p>	
예금자 보호 여부	해당	<p>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.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·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.</p>

3 유의사항

- 타인 양도 및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 불가합니다.
- 만기일을 앞당기거나 만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며 만기일 이후에는 납입 불가합니다.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**고객행복센터(1588-2100, 1544-21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banking.nonghyup.com>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상품문의는 **고객행복센터(1588-2100, 1544-2100)**로 연락바랍니다.